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Ж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가 (<mark>2023.09.13.</mark> 이전부터 계속		! 미만 계속 거주자 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현	한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	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절	용	민간택지

본 아파트는 2개 블록(1블록, 2블록)의 주택형을 통합하였으므로, 주택형별 신청은 가능하나 블록선택은 불가능함을 인지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후에는 각 블록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정하고 관리사무소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며, 각 블록별로 부대시설의 규모 및 설치사항이 상이합니다.

I 공통 유의사항

-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분양 상담 전화(☎1600-1211), 공식 홈페이지(http://www.해링턴스퀘어신흥역.com)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 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4,07.3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건경시력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	월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금 충족	1순위(12 7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주택 및 '분양권 등')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③번 선정 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에 의거 청약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60㎡이하 및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해링턴스퀘어신흥역.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 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단, 특별공급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합니다. (단,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 다.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2024.07.3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표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9.13(금요일)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역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13)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1년이상 (2023.09.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성남시 중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1/2)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분실 등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2022.12.31.개정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해당건설지역(성남시)은「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 단,「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 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 정	09월 23일(월)	09월 24일(화)	09월 25일(수)	10월 02일(수)	10월 05일(토) ~ 10월 11일(금) / 7일간	10월 14일(월) ~ 10월 18일(금) / 5일간
방 법	인터넷 청약	인터넛	. 청약	개별조회	견본주택 방문접수	견본주택
5 H	(09:00 ~ 17:30)	(09:00 ~	· 17:30)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0:00~16:00)	(10:00~16:00)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 문의 : ☎1600-1211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시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성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견본주택] - 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 라안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단, 은행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 재개발과-8224호(2024.09.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91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5층, 15개동, 2개 블록 / 총 1,972세대[조합원공급 653세대(보류지 19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3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635세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2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3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3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13세대 포함]
- 입주예정일: **2027년 12월 예정**(공정,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인허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합니다.)
- 주택형 약식표기 및 블록별 세대수 안내

Ш

주틱	백형	059.9234A	059.9474B	059.9692C	059.9268D	074.9472A	074.9788B	074.9367C	084.9852A	084.9152B	084.9343C	합 계
약식	약식 표기		59B	59C	59D	74A	74A 74B 74C 84A		84A	84B	84C	합계
세대수	1블록	246	194	-	62	26	27	26	31	51	24	687
게네ㅜ	2블록	127	257	129	-	-	-	-	30	59	30	632
합	계	373	451	129	62	26	27	26	61	110	54	1,319

- ※ 본 사업지는 신청(청약)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별 주택형을 통합하였으므로, 통합 주택형 내 해당타입의 공급면적 등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1,2블록 통합 주택형 내 블록별 면적이 상이하오니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조합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약식		주	택공급면적(r	n²)	기타						특별공급	급 세대수				최하층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 델	주택형 (전용면적)	표기 (타입)	블록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 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소계	일반 공급	우선 배정세대
		01	059.9234A	59A	1블록	59.9234	22.1342	82.0576	45.7174	127.7750	18.8258	373	37	37	67	11	33	185	188	11
		01	039.9234A	39A	2블록	59.9234	24.8091	84.7325	49.3547	134.0872	20.0093	3/3	31	31	07	11	33	103	100	11
		02	059.9474B	59B	1블록	59.9474	23.2141	83.1615	45.7356	128.8971	19.0791	451	45	45	81	13	40	224	227	18
		02	039.94746	396	2블록	59.9474	25.8901	85.8375	49.3744	135.2119	20.2703	431	43	43	01	15	40	224	221	10
		03	059.9692C	59C	2블록	59.9692	25.1752	85.1444	49.3923	134.5367	20.1066	129	12	12	23	3	11	61	68	3
		04	059.9268D	59D	1블록	59.9268	23.0581	82.9849	45.7199	128.7048	19.0386	62	6	6	11	1	5	29	33	1
민영		05	074.9472A	74A	1블록	74.9472	28.1228	103.0700	57.1794	160.2494	23.6465	26	2	2	4	0	2	10	16	2
주택	2024000210	06	074.9788B	74B	1블록	74.9788	28.2232	103.2020	57.2036	160.4056	23.6768	27	2	2	4	0	2	10	17	2
' ¬		07	074.9367C	74C	1블록	74.9367	28.9160	103.8527	57.1714	161.0241	23.8261	26	2	2	4	0	2	10	16	2
		08	084.9852A	84A	1블록	84.9852	30.8750	115.8602	64.8378	180.6980	26.5809	61	6	6	11	1	5	29	32	4
		08	004.9032A	04A	2블록	84.9852	34.6686	119.6538	69.9963	189.6501	28.2559	01	Ü	0	11	ļ ļ	3	29	32	4
		09	084.9152B	84B	1블록	84.9152	30.8124	115.7276	64.7843	180.5119	26.5505	110	11	11	19	3	9	53	57	10
		09	004.91326	040	2블록	84.9152	34.6029	119.5181	69.9386	189.4567	28.2238	110	11	1 1	19	3	9	33	31	10
		10	084.9343C	84C	1블록	84.9343	31.5602	116.4945	64.7989	181.2934	26.7264	54	5	5	9	1	4	24	30	5
		10	004.9343C	040	2블록	84.9343	35.3515	120.2858	69.9545	190.2403	28.4051	34	5	3	ש	'	4	24	30	3
						합계						1,319	128	128	233	33	113	635	684	58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총 2개 블록(1블록, 2블록)을 일괄적으로 공급하여, 동일한 주택형 내 일부 면적 및 구조가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통합 주택형에 대한 **당첨자의 동.호 배정은 블록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하오니** 견본주택 및 안내문 등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생활지원센터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블록별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분양당시 주거분 대지비율 면적(분양 이후 용도별 면적이 변경되더라도 주거분 대지면적은 변경없음)** 주택형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조합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약식	꿃	해당동		해당		공급금액		계약금	∃ (10%)			중도금	₹(60%)			잔금 (30%)
五기	세대수	(라인	층	세대수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타입)		,			비재기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024.12.20	2025.06.20	2025.12.22	2026.07.20	2026.12.21	2027.06.21	입주지정일
		101동(2,3호)	2층	6	530,170,000	363,130,000	893,300,000	30,000,000	59,330,000	89,330,000	89,330,000	89,330,000	89,330,000	89,330,000	89,330,000	267,990,000
		102동(2,3호) 103동(2,3호)	3층	11	535,690,000	366,910,000	902,600,000	30,000,000	60,260,000	90,260,000	90,260,000	90,260,000	90,260,000	90,260,000	90,260,000	270,780,000
		104동(2,3호)	4층	11	541,210,000	370,690,000	911,900,000	30,000,000	61,190,000	91,190,000	91,190,000	91,190,000	91,190,000	91,190,000	91,190,000	273,570,000
59A	373	105동(2,3호) 106동(2,3호)	5층	9	546,670,000	374,430,000	921,100,000	30,000,000	62,110,000	92,110,000	92,110,000	92,110,000	92,110,000	92,110,000	92,110,000	276,330,000
		201동(3호)	6~10층	80	552,190,000	378,210,000	930,400,000	30,000,000	63,040,000	93,040,000	93,040,000	93,040,000	93,040,000	93,040,000	93,040,000	279,120,000
		202동(3호) 203동(3호)	11~20층	160	557,650,000	381,950,000	939,600,000	30,000,000	6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93,960,000	281,880,000
		204동(3호)	21층 이상	96	563,170,000	385,730,000	948,900,000	30,000,000	64,890,000	94,890,000	94,890,000	94,890,000	94,890,000	94,890,000	94,890,000	284,670,000
		101동(1,4호)	2층	10	524,110,000	358,990,000	883,100,000	30,000,000	58,310,000	88,310,000	88,310,000	88,310,000	88,310,000	88,310,000	88,310,000	264,930,000
		102동(1호) 103동(1호)	3층	10	529,580,000	362,720,000	892,300,000	30,000,000	59,230,000	89,230,000	89,230,000	89,230,000	89,230,000	89,230,000	89,230,000	267,690,000
		104동(1,4호)	4층	10	534,980,000	366,420,000	901,400,000	30,000,000	60,140,000	90,140,000	90,140,000	90,140,000	90,140,000	90,140,000	90,140,000	270,420,000
59B	451	105동(1,4호) 106동(1,4호)	5층	11	540,440,000	370,160,000	910,600,000	30,000,000	61,060,000	91,060,000	91,060,000	91,060,000	91,060,000	91,060,000	91,060,000	273,180,000
		201동(2,4호)	6~10층	90	545,840,000	373,860,000	919,700,000	30,000,000	61,970,000	91,970,000	91,970,000	91,970,000	91,970,000	91,970,000	91,970,000	275,910,000
		202동(2,4호) 203동(2,4호)	11~20층	180	551,240,000	377,560,000	928,800,000	30,000,000	62,880,000	92,880,000	92,880,000	92,880,000	92,880,000	92,880,000	92,880,000	278,640,000
		204동(2,4호)	21층 이상	140	556,700,000	381,300,000	938,000,000	30,000,000	6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93,800,000	281,400,000
			2층	2	532,780,000	364,920,000	897,700,000	30,000,000	59,770,000	89,770,000	89,770,000	89,770,000	89,770,000	89,770,000	89,770,000	269,310,000
			3층	3	538,300,000	368,700,000	907,000,000	30,000,000	6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90,700,000	272,100,000
		201동(1호)	4층	3	543,820,000	372,480,000	916,300,000	30,000,000	6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274,890,000
59C	129	202동(1호) 203동(1호)	5층	3	549,340,000	376,260,000	925,600,000	30,000,000	62,560,000	92,560,000	92,560,000	92,560,000	92,560,000	92,560,000	92,560,000	277,680,000
		204동(1호)	6~10층	20	554,860,000	380,040,000	934,900,000	30,000,000	63,490,000	93,490,000	93,490,000	93,490,000	93,490,000	93,490,000	93,490,000	280,470,000
			11~20층	40	560,380,000	383,820,000	944,200,000	30,000,000	64,420,000	94,420,000	94,420,000	94,420,000	94,420,000	94,420,000	94,420,000	283,260,000
			21층 이상	58	565,900,000	387,600,000	953,500,000	30,000,000	65,350,000	95,350,000	95,350,000	95,350,000	95,350,000	95,350,000	95,350,000	286,050,000
			2층	1	536,040,000	367,160,000	903,200,000	30,000,000	60,320,000	90,320,000	90,320,000	90,320,000	90,320,000	90,320,000	90,320,000	270,960,000
			3층	3	541,560,000	370,940,000	912,500,000	30,000,000	61,250,000	91,250,000	91,250,000	91,250,000	91,250,000	91,250,000	91,250,000	273,750,000
		104동(5호)	4층	3	547,140,000	374,760,000	921,900,000	30,000,000	62,190,000	92,190,000	92,190,000	92,190,000	92,190,000	92,190,000	92,190,000	276,570,000
59D	62	105동(5호)	5층	1	552,720,000	378,580,000	931,300,000	30,000,000	63,130,000	93,130,000	93,130,000	93,130,000	93,130,000	93,130,000	93,130,000	279,390,000
		106동(5호)	6~10층	15	558,240,000	382,360,000	940,600,000	30,000,000	64,060,000	94,060,000	94,060,000	94,060,000	94,060,000	94,060,000	94,060,000	282,180,000
			11~20층	30	563,820,000	386,180,000	950,000,000	30,000,000	65,000,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95,000,000	285,000,000
			21층 이상	9	569,340,000	389,960,000	959,300,000	30,000,000	65,930,000	95,930,000	95,930,000	95,930,000	95,930,000	95,930,000	95,930,000	287,790,000
			2층	2	624,650,000	427,850,000	1,052,500,000	30,000,000	75,250,000	105,250,000	105,250,000	105,250,000	105,250,000	105,250,000	105,250,000	315,750,000
			3층	2	631,000,000	432,200,000	1,063,200,000	30,000,000	76,320,000	106,320,000	106,320,000	106,320,000	106,320,000	106,320,000	106,320,000	318,960,000
74A	26	101동(5,6호)	4층	2	637,350,000	436,550,000	1,073,900,000	30,000,000	77,390,000	107,390,000	107,390,000	107,390,000	107,390,000	107,390,000	107,390,000	322,170,000
/ 1/1	20	1010(2,0エ)	5층	2	643,710,000	440,890,000	1,084,600,000	30,000,000	78,460,000	108,460,000	108,460,000	108,460,000	108,460,000	108,460,000	108,460,000	325,380,000
			6~10층	10	650,060,000	445,240,000	1,095,300,000	30,000,000	79,530,000	109,530,000	109,530,000	109,530,000	109,530,000	109,530,000	109,530,000	328,590,000
			11~20층	8	656,410,000	449,590,000	1,106,000,000	30,000,000	8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331,800,000

			2층	2	625,430,000	428,370,000	1,053,800,000	30,000,000	75,380,000	105,380,000	105,380,000	105,380,000	105,380,000	105,380,000	105,380,000	316,140,000
			3층	2	631,780,000	432,720,000	1,064,500,000	30,000,000	76,450,000	106,450,000	106,450,000	106,450,000	106,450,000	106,450,000	106,450,000	319,350,000
74B	27	102동(5호)	4층	2	638,130,000	437,070,000	1,075,200,000	30,000,000	77,520,000	107,520,000	107,520,000	107,520,000	107,520,000	107,520,000	107,520,000	322,560,000
/4D	21	103동(5호)	5층	2	644,480,000	441,420,000	1,085,900,000	30,000,000	78,590,000	108,590,000	108,590,000	108,590,000	108,590,000	108,590,000	108,590,000	325,770,000
			6~10층	10	650,830,000	445,770,000	1,096,600,000	30,000,000	79,660,000	109,660,000	109,660,000	109,660,000	109,660,000	109,660,000	109,660,000	328,980,000
			11~20층	9	657,180,000	450,120,000	1,107,300,000	30,000,000	8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110,730,000	332,190,000
			2층	2	629,220,000	430,980,000	1,060,200,000	30,000,000	76,020,000	106,020,000	106,020,000	106,020,000	106,020,000	106,020,000	106,020,000	318,060,000
			3층	2	635,570,000	435,330,000	1,070,900,000	30,000,000	77,090,000	107,090,000	107,090,000	107,090,000	107,090,000	107,090,000	107,090,000	321,270,000
74C	26	102동(4호)	4층	2	641,980,000	439,720,000	1,081,700,000	30,000,000	78,170,000	108,170,000	108,170,000	108,170,000	108,170,000	108,170,000	108,170,000	324,510,000
140	20	103동(4호)	5층	2	648,390,000	444,110,000	1,092,500,000	30,000,000	79,250,000	109,250,000	109,250,000	109,250,000	109,250,000	109,250,000	109,250,000	327,750,000
			6~10층	10	654,740,000	448,460,000	1,103,200,000	30,000,000	80,320,000	110,320,000	110,320,000	110,320,000	110,320,000	110,320,000	110,320,000	330,960,000
			11~20층	8	661,150,000	452,850,000	1,114,000,000	30,000,000	81,400,000	111,400,000	111,400,000	111,400,000	111,400,000	111,400,000	111,400,000	334,200,000
			2층	1	671,780,000	460,120,000	1,131,900,000	30,000,000	83,190,000	113,190,000	113,190,000	113,190,000	113,190,000	113,190,000	113,190,000	339,570,000
		107동(3호)	3층	6	678,780,000	464,920,000	1,143,700,000	30,000,000	84,370,000	114,370,000	114,370,000	114,370,000	114,370,000	114,370,000	114,370,000	343,110,000
		108동(3,4호)	4층	6	685,780,000	469,720,000	1,155,500,000	30,000,000	85,550,000	115,550,000	115,550,000	115,550,000	115,550,000	115,550,000	115,550,000	346,650,000
84A	61	109동(3,4호) 110동(2호)	5층	4	692,790,000	474,510,000	1,167,300,000	30,000,000	86,730,000	116,730,000	116,730,000	116,730,000	116,730,000	116,730,000	116,730,000	350,190,000
		205동(3호)	6~10층	23	699,850,000	479,350,000	1,179,200,000	30,000,000	87,920,000	117,920,000	117,920,000	117,920,000	117,920,000	117,920,000	117,920,000	353,760,000
			11~20층	10	706,850,000	484,150,000	1,191,000,000	30,000,000	89,10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119,100,000	357,300,000
			21층 이상	11	713,860,000	488,940,000	1,202,800,000	30,000,000	90,280,000	120,280,000	120,280,000	120,280,000	120,280,000	120,280,000	120,280,000	360,840,000
			2층	5	671,010,000	459,590,000	1,130,600,000	30,000,000	83,060,000	113,060,000	113,060,000	113,060,000	113,060,000	113,060,000	113,060,000	339,180,000
		107동(1,4호)	3층	10	678,010,000	464,390,000	1,142,400,000	30,000,000	84,240,000	114,240,000	114,240,000	114,240,000	114,240,000	114,240,000	114,240,000	342,720,000
		108동(1,5호)	4층	10	685,010,000	469,190,000	1,154,200,000	30,000,000	85,420,000	115,420,000	115,420,000	115,420,000	115,420,000	115,420,000	115,420,000	346,260,000
84B	110	109동(1,5호) 110동(1,4호)	5층	8	692,020,000	473,980,000	1,166,000,000	30,000,000	86,600,000	116,600,000	116,600,000	116,600,000	116,600,000	116,600,000	116,600,000	349,800,000
		205동(1,4호)	6~10층	35	699,020,000	478,780,000	1,177,800,000	30,000,000	87,780,000	117,780,000	117,780,000	117,780,000	117,780,000	117,780,000	117,780,000	353,340,000
			11~20층	20	706,020,000	483,580,000	1,189,600,000	30,000,000	88,960,000	118,960,000	118,960,000	118,960,000	118,960,000	118,960,000	118,960,000	356,880,000
			21층 이상	22	713,030,000	488,370,000	1,201,400,000	30,000,000	90,140,000	120,140,000	120,140,000	120,140,000	120,140,000	120,140,000	120,140,000	360,420,000
			2층	2	675,400,000	462,600,000	1,138,000,000	30,000,000	83,8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341,400,000
		107동(2호)	3층	5	682,460,000	467,440,000	1,149,900,000	30,000,000	84,990,000	114,990,000	114,990,000	114,990,000	114,990,000	114,990,000	114,990,000	344,970,000
		108동(2호)	4층	5	689,460,000	472,240,000	1,161,700,000	30,000,000	86,170,000	116,170,000	116,170,000	116,170,000	116,170,000	116,170,000	116,170,000	348,510,000
84C	54	109동(2호) 110동(3호)	5층	5	696,530,000	477,070,000	1,173,600,000	30,000,000	87,360,000	117,360,000	117,360,000	117,360,000	117,360,000	117,360,000	117,360,000	352,080,000
		205동(2호)	6~10층	16	703,590,000	481,910,000	1,185,500,000	30,000,000	88,550,000	118,550,000	118,550,000	118,550,000	118,550,000	118,550,000	118,550,000	355,650,000
			11~20층	10	710,650,000	486,750,000	1,197,400,000	30,000,000	89,740,000	119,740,000	119,740,000	119,740,000	119,740,000	119,740,000	119,740,000	359,220,000
			21층 이상	11	717,660,000	491,540,000	1,209,200,000	30,000,000	90,920,000	120,920,000	120,920,000	120,920,000	120,920,000	120,920,000	120,920,000	362,760,000
					1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부정한 당첨자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 분 (약식표기) 경기도				59C	59D	74A	74B	74C	84A	84B	84C	계
			7	9	3	1	1	0	1	1	2	1	26
일반(기관추천)	장애인	서울특별시	4	4	1	0	0	1	0	1	1	0	12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1	2	1	1	0	0	0	1	0	0	6

	국가유공자 등			9	2	1	1	1	0	1	2	1	25	
	장기복무 제대군인			4	1	1	0	0	0	0	2	1	1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8	1	1	0	0	0	1	2	1	21	
	중소기업 근로자			9	3	1	0	0	1	1	2	1	25	
		소 계	37	45	12	6	2	2	2	6	11	5	128	
		경기도 거주자(50%) 지역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50%)		23	6	3	1	1	1	3	6	3	6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기준			22	6	3	1	1	1	3	5	2	62	
			소 계	37	45	12	6	2	2	2	6	11	5	128
	신혼부부	특별공급	67	81	23	11	4	4	4	11	19	9	23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	13	3	1	0	0	0	1	3	1	33	
생애최초 특별공급			33	40	11	5	2	2	2	5	9	4	113	
	합	계	185	224	61	29	10	10	10	29	53	24	63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용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 3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리) 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및 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1회 한정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자격요건 / 자격제한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I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자격 요건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유의사항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 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28세대

구 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아래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 군인포함)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추천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28세대

구 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	날시에 거주하거나 수 5	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아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힘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	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	며, 자녀가 청약신청자	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①지역 → ②	배점 → ③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	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및 경기도 거주	자 50%(성남시 및 경	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성남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 포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당첨자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물량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선정방법	경기도 신청 접수 결과 미달 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T.00H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 공급 미적용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	선순위 배점 기준표 (다	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겨	l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
		1명	5	
세대구성(3)	F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mark>청약</mark>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부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7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7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영역시·특별자시시 기준이고, 모든 모·특별자시모 기준이며, 구모권의 경우 시출·경기·전신시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양

※ (1), (2):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 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 및 부정한방법 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이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18% 범위 : 233세대

구 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⑤추첨
 ① 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③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어,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9.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A	소득구분		소득금액							
꼬극구문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신생아우선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0070 14	1,001,505	0,2 10, 107	0,773,071	3,303,202	10,551,155	11,155,1012		
우선공급	부부 모두	100% 초과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0,403,411 년	~ 3,030,100 ⊡	~ 10,550,005 년	~11,473,330 년	~ 12,421,132 1	~15,507,0 4 5 <u>H</u>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5,000,314편~	11,541,055년~	12,203,100년~	15,500,590년~	14,432,091전~	15,555,507 년~		
THOU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1,207,215원~	12 107 5/8위	14 040 115의	15 201 252위	16 562 300위	17,823,527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11,201,213년~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1,023,321편~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소득 및 자산 기준, 유의사항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주 * 「농지법」 * 「초지법」 주소인 주 * 공부상 도 * 종중소유 입주(예정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경 경우 E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당)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5

16

17

구 분	내용							
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 처리될 수 있으며, 그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	→ 기타지역 거주자 [성남시 1년 미만 거주 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 자에게 있음		너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첨자			7년 이상 ~ 8년 미만	16				
성방법			0명	5	4명	25		
		35	1명	10	5명	30		
	②부양가 족 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입주자저축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6

7

8

13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17

가입기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13세대

구 분		내용					
대상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의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저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 당첨자 선정방법: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하는 분 액 이상)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분)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I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3점사 신청청합 : ①오득구분 → ②시역 → ③구점 ① 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I단세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건세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3단세	(35%)	세네크 필요판도국의 단단도 도시단도사 기타전부를 필요판도국크 130% 의학단 문
4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4L/1	(15%)	세네크 ᆯᆼᅹᅩᆨ이 단단도 포시트로서 기투현물 ᆯᆼᅹᅩᆨ크 130% 포퍼 100% 이어난 문

			±0. 50.31.1		_
	5단계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추첨공급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Täöu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9.1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	금액		
	エライモ	미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우선공급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mark>- 자산보유기준 :</mark>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구분	금액	내용

소득 및 자산 기준, 유의사항

			- 642/1	기는 에용 세레기 포퓨의로 쓰는 모든 현기	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十当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농지법 경우 * 「초지법 동일한 * 공부상 <u>「</u>	,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 주소인 경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S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1년 이상(2023.09.13.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청약통장 자격요건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m²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m²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 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 이하	40%	60%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①무주택기간	22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25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본인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입기간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010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배우자		7년 이상 ~ 8년 미만	9		
		ниоть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L	-H ·	용
			_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용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통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 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조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기준입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합니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시 유의사항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mark>2024.09.23.(월)</mark>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440번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
	1순위	2024.09.24.(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순위	2024.09.25.(수) 09:00~17:30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람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	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117-17 12)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또는 영주증을 말함)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	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0.02(수) ~ 2024.10.11(급)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2024.10.0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시: 2024.10.02(수)	
일반공급	1순위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2208	2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및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함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및 유의사항

구 분	선 정 방 법
유의사항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별도 통지)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내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	분	서류 제출 대상자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당첨자 전원	2024.10.05.(토) ~ 2024.10.11.(금) (7일간)	•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
00 001	일반공급) - 이러시 단편	10:00 ~ 16:00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440번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에의 납구시	일반공급	에이 비구시 시ㅠ비구 네싱는 글도 중도 예정	에이비구시 시ㅠ비구 글이는 글도 중도 에이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13.)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전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 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공통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서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0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0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시 생략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서류	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0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해당기간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 '청약Home' 홈페이지(<u>www.applyhome.co.kr)에서</u> 청약한 경우 생략		
	0		배점기준표	본인	• 한국부동산 청약Home(www. 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견본주택에 비치)		
		0	한부모가족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다자녀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0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п</u> +^г)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 만18세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11 + 11 11		0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를 포함하여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0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세대원	※ 응답한영사의 역계은록(응답한영사의 메구사의 역계은록을 포함)는 답구시모습증고들을 기운으로 쬐는 1한 이영 계속이어 응답한영사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0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사실 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12 00 1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세대원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0		자격요건 확인서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당사 견본주택 비치)	
			소득세 입증서류	본인		
	0		(납부내역증명서 등)		•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서류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본인 및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0			만19세 이상	※ 메구자 군디제대는 군디전 메구자와 흥절한 구한등목표등운영에 등세된 제대권 전원 제물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세대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0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사실 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기조리게즈면 너/사비\	HUOTL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생애최초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0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배우자)		
		0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 만18세이상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 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1 20 1-4-2(0:11)	직계존속	에 당합된당에 보는 그 대부가의 같은 세대을 부분당되고에 당세하다를 학년하기 위한 당부 (1년이당의 부모년당사당, 세대부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но п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11=11 E2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서류	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제출 (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0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한국부동산 청약Home(www. 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견본주택에 비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Ο		주민등록표초본(상세)	-140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노부모 부양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OINE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일반공급 (가점제,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가점제 예비입주자)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서류	유형				
구 분	구 분 필수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10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7/10/7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	0		인감증명서		• 청약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대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대리인	0		인감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신청시	0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도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부양가족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일정,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홈페이지(http://www.해링턴스퀘어신흥역.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합니다.(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소명자료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I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②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자영업자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이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② 해당직장/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해당직장/세무 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견본주택 비치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3.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득증빙서류는 홈텍스(발급대상자 정보 마스킹처리) 발급 및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입증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기본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건강보험공단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 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 및 세무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상기서류로 결정세액 납부 및 환급 내역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일 경우: *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단,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④ 일용직 근로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추가 (해당자)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재산세 납부현황(부동산 소유자) ③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①,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자체 축산과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본인 및 청약자 공동/금융인증서 지참 (※견본주택에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조회내역 확인)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주민센터 방문 전국통합발급요청,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은 전국단위안됨)

※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자산보유기준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등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를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됨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5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 E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ㅎ '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VШ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당첨자 계약 체결	2024.10.14.(월)~2024.10.18.(금) / 5일간 10:00~16:00	•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 I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440번지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홈페이지(http://www.해링턴스퀘어신흥역.com)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ත1600-1211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0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인감증명서 또는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계약 불가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본인 계약 시		0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자격확인서류 일체		
		0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기타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홈페이지 서식 게시)
본인 계약 시	0		정부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수입인지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대리인 계약 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본인 이외)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1/2)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분실 등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2022.12.31.개정된「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q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351-4451-11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201호 계약자 → '1011201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702홍길동')
- ※ 계약금 납부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신청자 모집 여부는 잔여세대 발생에 따라 주택형별로 판단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④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⑥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 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고, 1순위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성남시 중원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

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최대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의 개인(대출 미신청 및 대출 부적격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에서 알선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관련 세부 일정은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참고 및 기타 유의사항

ΙX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m²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습니다.)이 **비수도권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 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 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27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단지 1개소, 2단지 1개소), 경로당(1단지 1개소, 2단지 1개소), 어린이집(1단지 1개소, 2단지 1개소), 피트니스(1단지 1개소, 2단지 1개소), 골프연습장 1단지 1개소, 게스트하우스(1단지 4실, 2단지 2실), 작은도서관(1단지 1개소, 2단지 1개소), 독서실(1단지 1개소, 2단지 1개소)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Χ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1)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0807	계약시	2024.12.20	입주지정일	017
59A	19,130,000	1,913,000	1,913,000	15,304,000	
59B	17,230,000	1,723,000	1,723,000	13,784,000	
59C	24,160,000	2,416,000	2,416,000	19,328,000	
59D	20,920,000	2,092,000	2,092,000	16,736,000	
74A	21,130,000	2,113,000	2,113,000	16,904,000	
74B	22,220,000	2,222,000	2,222,000	17,776,000	
74C	23,410,000	2,341,000	2,341,000	18,728,000	
84A	21,710,000	2,171,000	2,171,000	17,368,000	
84B	21,480,000	2,148,000	2,148,000	17,184,000	
84C	21,230,000	2,123,000	2,123,000	16,984,000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충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위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활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위탁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약식표기(타입)	설치 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제조사명)
FOA FOR FOC FOR	2개소	거실+침실1(안방)	3,190,000	
59A, 59B, 59C, 59D	4개소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5,480,000	
744 740 740	2개소	거실+침실1(안방)	3,470,000	LG
74A, 74B, 74C	4개소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6,050,000	LG
04A 04D 04C	3개소	거실+주방+침실1(안방)	4,620,000	
84A, 84B, 84C	5개소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19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시공 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시점에 선정된 모델로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추가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으로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비용은 에어컨 설치금액에서 미옵션시 적용되는 매립배관 시공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 가전제품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약식표기(타입)	설치품목	제조사명	모델번호	공급금액	비고
	59A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냉장고장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 : BC1L1AA1, 384L 냉동 : BC1F1AA, 321L 김치 : BC1K1AA1, 324L	4,870,000	
	59B, 59C, 59D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냉장고장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 : BC1L1AA1, 384L 냉동 : BC1F1AA, 321L 김치 : BC1K1AA1, 324L	4,920,000	
	74A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 키큰수납장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 : BC1L1AA1, 384L 냉동 : BC1F1AA, 321L 김치 : BC1K1AA1, 324L	5,020,000	
	74B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 키큰수납장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 : BC1L1AA1, 384L 냉동 : BC1F1AA, 321L 김치 : BC1K1AA1, 324L	5,040,000	
주방	74C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 키큰수납장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 : BC1L1AA1, 384L 냉동 : BC1F1AA, 321L 김치 : BC1K1AA1, 324L	5,290,000	
TÖ	84A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 키큰수납장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 : BC1L1AA1, 384L 냉동 : BC1F1AA, 321L 김치 : BC1K1AA1, 324L	5,190,000	
	84B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 키큰수납장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 : BC1L1AA1, 384L 냉동 : BC1F1AA, 321L 김치 : BC1K1AA1, 324L	5,070,000	
	84C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 키큰수납장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 : BC1L1AA1, 384L 냉동 : BC1F1AA, 321L 김치 : BC1K1AA1, 324L	5,350,000	
	전타입	식기세척기	삼성	DW60T7065SS	1,050,000	
	74A, 74B, 74C 84A, 84B, 84C	렌지후드 (독립형)	하츠	PSC-90S	1,150,000	
	전타입	인덕션(3구)	SK매직	IHR-B3300	600,000	
욕실	전타입	다기능 복합건조기	그렉스	BD-150A	580,000	
드레스룸	전타입	제습기	코스텔	CDD-600B	640,000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기본 냉장고장 구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미건립세대는 반드시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G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패키지는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 하실 수 없습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상부장은 타입별로 크기가 상이하며, 용량에 따라 가전제품 배치가 불가할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코스텔 (CDD-600B)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 선반)' 미 선택 시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침실1에 속한 드레스룸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지정된 위치 외 임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3) 현관중문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약식표기(타입)	설치품목	공급금액	비고
	59A, 59B, 59C, 59D	3연동 슬라이딩도어	2,480,000	
현관중문	74A, 74B, 74C	3연동 슬라이딩도어	2,510,000	
	84A, 84B, 84C	3연동 슬라이딩도어	2,630,000	

- 현관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중문과 가구 및 벽채, 문짝과 문짝 사이에 이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 형태에 따라 중문 형태 및 크기가 상이하며 본공사시 프레임 및 창호 부속물 등의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 VAT포함]

설치품목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비고
	59A	4,500,000	
	59B	4,820,000	
	59C	4,710,000	
감성조명 + 디자인 특화등	59D	4,450,000	
감성조명(거실등+거실간접등+감성조명스위치),	74A	4,940,000	
특화조명(복도간접등+현관신발장 하부조명)	74B	4,670,000	
	74C	4,790,000	
	84A	5,550,000	
	84B	5,610,000	
	84C	5,310,000	
거실 씰링팬	전타입	790,000	감성조명 유상옵션 선택세대에 한해 선택가능 (기본조명 선택시 씰링팬 설치위치에 기본조명 설치됨)
복도 / 거실 / 주방	59A, 59D	500,000	포세린타일(600X600)
포세린타일	59B, 59C	510,000	도세한다 글(000,0000)
	74A	1,090,000	
보드 , 기사 , 조바 , 취과 ㅠ베리디이	74B	1,010,000	_ 복도/거실/주방 포세린타일(800X800)
숙도 / 기결 / 구정 / 연단 포제인다결	74C	1,000,000	현관 포세린타일(800X800)
	84A	1,160,000	
	감성조명 + 디자인 특화등 감성조명(거실등+거실간접등+감성조명스위치), 특화조명(복도간접등+현관신발장 하부조명) 거실 씰링팬 복도 / 거실 / 주방	설시품폭 (타입) 59A 59B 59C 759C 759D 감성조명 + 디자인 특화등 59D 감성조명(거실등+거실간접등+감성조명스위치), 특화조명(복도간접등+현관신발장 하부조명) 74B 74C 84A 84B 84C 거실 씰링팬 전타입 복도 / 거실 / 주방 포세린타일 59A, 59D 59B, 59C 74A 74B 4도 / 거실 / 주방 / 현관 포세린타일 74C	변함 (타임) 등 합급적 (타임) 등 합급적 (타임) 등 59A 4,500,000 등 59B 4,820,000 등 59B 4,820,000 등 59C 4,710,000 등 59C 4,710,000 등 59D 4,450,000 등 59D 4,450,000 등 59D 4,450,000 등 74A 4,500,000 등 74A 4,500,000 등 74B 4,670,000 등 74B 74B 74P,000 등 84A 5,550,000 등 84A 5,550,000 등 84B 5,610,000 등 84C 5,310,000 등 84C 5,310,000 등 74D 등

		84B	1,260,000	
		84C	1,150,000	
		59A, 59B	1,700,000	
		59C	2,510,000	
		59D	1,710,000	
		74A	1,870,000	
벽	거실 아트월 : 세라믹타일(1200X2400)	74B	1,880,000	
		74C	2,000,000	
		84A	2,030,000	
		84B	2,680,000	
		84C	1,970,000	
		59A	7,350,000	히든도어 + 벽면 시트판넬/가구판넬+고급손잡이
		59B	8,040,000	히든도어 + 벽면 시트판넬/가구판넬+세라믹타일+고급손잡이
		59C	7,420,000	
	히든도어 + 복도 디자인판넬 + 고급손잡이 (침실1(안방) / 침실2 / 침실3 / 공용욕실)	59D	7,650,000	히든도어 + 벽면 시트판넬+세라믹타일+고급손잡이
히든도어		74A	8,700,000	
		74B	7,470,000	
		74C	8,030,000	 히든도어+벽면 시트판넬/가구판넬+고급손잡이
		84A	9,360,000	
		84B	8,530,000	
		84C	8,940,000	
	복도 장식장	74A, 84A	1,160,000	
	숙도 성격성	84B	1,780,000	
		74A	2,880,000	
붙박이장	교차형 붙박이장	74C, 84A	2,850,000	 침실2, 침실3
		84B, 84C	3,230,000	
	통합형 붙박이장	59A, 59B	4,340,000	무상옵션(침실2, 침실3 통합) 선택 시
	안방 붙박이장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선반)	84A, 84B	4,990,000	
		59A	2,400,000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	59B	1,420,000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조명형	59C	2,440,000	
"	시스템 선반)			

	-			
		74A	2,570,000	
		74B	2,550,000	
		74C	3,420,000	
		84A	2,910,000	
		84B	2,210,000	
		84C	3,340,000	
가족실		59C	490,000	가족실
or	시스템선반(폴타입)	59D	400,000	침실3
침실3	월3	74B	400,000	침실3
		59A	3,100,000	
	 식탁 + 의자	59B, 59C, 59D	3,150,000	
	역복 + 의사 	74A, 74B, 74C	5,420,000	
		84A, 84B, 84C	5,420,000	
DP 가구		59A	4,580,000	
		59B, 59C, 59D	3,860,000	
	거실장	74A, 74B, 74C	5,380,000	
		84A, 84B, 84C	5,380,000	
·	 			

- 디자인 특화등 미선택시 주물우물천정 루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감성조명 미선택시 실링펜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평형별 유상옵션 가구 구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미건립세대는 반드시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주방특화

[단위 : 원 / VAT포함]

					[CII. 6 / VAIZE]
구분	설치품목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비고
		우물천정 적용	59A	1,620,000	
		루버 적용	59B	1,330,000	
		루버 적용	59C	1,340,000	
		루버 적용	59D	1,340,000	
주방 천정	주방조명(식탁등+주방등)	우물천정 적용	74A	1,340,000	
10 00	+ 주방우물천정	루버 적용	74B	1,480,000	
		우물천정 적용	74C	1,290,000	
		우물천정 적용	84A	1,380,000	
		루버 적용	84B	1,550,000	
		우물천정 적용	84C	1,270,000	
			59A	3,820,000	
주방 가구	주방 가구 주방 조명매입형 유리 상부장 + 대		59B, 59C, 59D	3,400,000	
				5,490,000	
			- 17 -	I .	I .

		74B	4,410,000	
		74C	4,580,000	
		84A	5,970,000	
		84B	4,040,000	
		84C	4,940,000	
		59A	5,620,000	
		59B, 59D	5,090,000	
		59C	5,340,000	
7 U	주방 상판/벽체 : 세라믹타일	74A	6,050,000	
주방 상판 + 벽체	+ 외산 씽크볼	74B	6,080,000	
8년 + 국제	+ 매입형콘센트	74C	5,620,000	
		84A	6,250,000	
		84B	5,640,000	
		84C	5,890,000	
즈바 기기	즈바 자시자, 즈바 팬트리/미서테니 아파르\	74A	2,190,000	주방 팬트리 1, 2
주방 가구	주방 장식장+주방 팬트리(미선택시 알파룸)	84A	5,020,000	주방장식장, 주방팬트리 + 복도팬트리

- 디자인 특화등 미선택시 주물우물천정 루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평형별 유상옵션 가구<붙박이장, 안방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 벽판넬 조명형시스템 선반), 시스템선반 구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미건립세대는 반드시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수전 및 도기류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타입	설치품목	제조사명	모델번호	공급금액	비고
도기류	전타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대림통상	DB-9700	1,030,000	공공욕실, 부부욕실 각1개소

7)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조건 및 일정

구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납입시기	계약시	2024.12.20	입주지정일	-
납입금액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10%	공급금액의 80%	-

8)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우리은행	1005-401-798829	효성중공업(주)

-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는 상기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I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로 기재)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X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	일반사항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한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분 아마트는 실제로 인주하실 분급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성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목급을 절심하여 지급합시 관련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난 아마트 축사 중 전체지면, 문화재 발견 및 인접병 발생 등 예기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채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소인)에 대한 분양대급체권을 주택되시보증자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광면도 상의 지수는 중심선 기준 (별고나의 경우 외국선 기존)으로 안목자수와는 자이가 있습니다. 주백규모의 표시는 소수형 첫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형 이하여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절 한편법) 제공조에 의거 공통주력 설계 공기를 죽취절과를 입자 가원전부터 60일간 인주만의 확인이 80만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계약서의 (유택병) 또는 (형)같은 경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인주자모집공고상 (유택형 (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계약서의 (유택병) 또는 (형)같은 경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인주자모집공고상 (유택형 (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기를 다른 사용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로관정적 성 업모기로 인자의 구자등적을 준비용표되면 상 건축으로 보내 제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 신청사를 작성한 경우 신청인 성명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일정 이후에는 어때한 경우라도 신청 경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점검수는 독병공급 유형병, 입바공급 소위병료 지정된 일자에는 가능하며, 해당 신청인의 신청이고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청점검수는 지상으로 유형병로 지정된 일자에는 가능하여, 해당 신청인의 신청이고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청점검수는 도병공급 유형병, 입바공급 소위병로 지정된 일자에는 가능하여, 해당 신청인의 신청이고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신청점 다는 보통하고 모든 수 있는 소위병을 되어 함께 보생을 수 있습니다. 전환성 및 건문으로 유형병로 지정되었으로 하는 환연 환경을 비료하여 건축으로 및 보생 보상으로 모든 분이이는 신청 작가하기 바라면, 마락이와,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의 보증 수 있으면, 한국 인적인 보상이 가능한 접어에서 지수에 보안된 수 있으면, 작가 지수일 목 환경을 가능하게 기반되다. 리작 조경의 설계 도본 교계적 가수 스크로 대생 수 있습니다. 건천으로 경계에 되어 가상에 있으로 하시기 바라면, 마락이와 기관을 가장으로 및 관련 경계에 되어 보신을 수 있습니다. 가장은 기계적의 소계 인상이 기를 지어 기원으로 하시기 바라되다. 이라가의 등의 시설을 취실 기관에 가장으로 및 보장의 기관에 대해 당사에 가라면, 마리대에 보고를 가장으로 및 환경을 기원하게 되었다고 하신이 기를 대장으로 있으며, 공사 전화의 기관을 기관하게 되었다고 하신의 기관을 가장이 지수 등의 기관을 제상하게 되었다고 하신이 기관을 제상하게 가장으로 및 가장으로 가장으로 및 관련 기관을 가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1단지: Ⅶ 0.197g, 2단지: Ⅶ 0.197g입니다.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 상 공공보행통로 어린이집/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키즈카페, 피트니스센터 및 외부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중앙광장 등),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본 공동주택(아파드)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 이행하여야 함)
 - 아파트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분양가에 변동은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될 예정이나 실제 시공시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 미포함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대피공간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갯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도기, 수전류(발코니수전 포함), 악세사리, 환기디퓨져,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 환기유니트,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의 제품사양 수량/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아파트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 됩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M/H 미 건립세대에 대하여서는 M/H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진 창호 형태, 위치, 사양 및 하드웨어 등은 본공사시 변경되며 난간대 안전성 검토에 따라 높이 및 사양이 변경됨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우물천장, 조명기기, 도어크기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환기디퓨져 및 세대내 스피커는 본 공사시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 기준으로 설치되오니 별도 확인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59C, 59D와 74A, 74B, 74C, 84B, 84C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59A, 59B와 84A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각각 시공되나, 타입별 마감자재 정보는 별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됩니다. 또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홍보물(단지, 커뮤니티 등의 CG, 모형 등)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조합 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설계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 포함(외관 디자인/색상 등)되어 있으며 총회 과정, 인허가 및 시공 과정 중 일부 내용이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시공 시 해당 홍보물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
		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의 세부 내용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CG(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분양홍보물 관련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성남제일초등학교이나, 인근 개발지구 사업 여부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학생 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 수정·중원중학군에 속하며 배정방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선지망후추첨에 의해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학군(구)는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급당인원 변경,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 향후 여건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본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사이의 통학로 정보(거리, 시간, 지도 등)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단지외부 여건	• 단지 내부에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산성대로(지하철연결통로 포함)와 어린이공원 및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와 연결, 1블럭 2개소, 2블럭 1개소]되며, 공공보행통로는 인근
니시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므로 입주민들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사업주체 및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통로의 유지관리 주체는 해당 단지 입주자 대표입니다.
		• 성남중앙지하도상가와 연계되어 신설되는 지하연결통로는 기존 신흥역 2번출구를 철거 후 재시공하여 1단지 104동과 111동 사이의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로 둘러쌓인 선큰광장으로
		연결됩니다. 지하연결통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동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으며 지하 선큰광장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가 각 주동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연결통로 공사는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사업주체인 시행사에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시공사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 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1동~102동, 110동, 203동 부근 지상1층에 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 포함)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은 각 블록별(1BL, 2BL)로 개별 설치되므로 블록별 설치시설이 상이하고, 단지간 상호 이용이 불가능하며, 입주 후 관리사무소도 각 블록별 1개소씩 각각 설치 운영됩니다. 입주민들의 타 단지 내 출입 및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며 각 블록별 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설치 사항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의 공동이용에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들께서 직접 혐의 조율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 기관 현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붕층 일부 또는 부대시설 인근에는 DA, 실외기 및 제연훼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장비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반 상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기초 형식 및 파일 내력, 단지외부 옹벽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견본주택(모델 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 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분양당시 주거분 대지비율 면적(분양 이후 용도별 면적이 변경되더라도 주거분 대지면적은 변경없음)을 주택형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의 비율에 따라 배분 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당사가 시공하지 않는 단지 이외의 시설은 모형에 정확히 표현할 수 없으며, 단지 내 실외기, DA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부 여건

|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단지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시설, 사인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차수판, 외부난간 형태/높이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혐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는 외벽 마감재, 풍압 등을 고려하여 시공되며, 외부 창호의 크기 및 사양(프레임 두께, 유리사양 포함)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옥상, 옥탑층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TV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피뢰침, 이동통신 중계기, 소방용 저수조, 정화조 송풍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냄새,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공법, 크기, 구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둥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통합관리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 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에 설치 예정인 마감재, 유상옵션 등은 시공여건 및 단종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세대별 옵션에 따른 공간 및 가구, 가전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허가(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 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및 지상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무인택배함,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지하 선큰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 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대수

구분		1BL	2BL
주거시설	공동주택	1,639 대	823 대
비주거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168 대	72 대
미구기시결 	근린생활시설	90 대	31 대
주차대	수 총합	1,897 대	926 대

- ※ 상기 블록별 주차대수는 공사여건 및 동선, 기능, 성능개선 등이 사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지내 지하1층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비주거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분리되어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 2층은 주차장 내 택배배달차량 이동 등을 고려하여 차량 통행구간은 유효높이 2.7m로, 주차구획은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지하 3~4층은 차량통행구간은 2.3m, 주차구획은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차량 이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와 비주거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BL 2개소, 2BL 1개소입니다.
- 각 블록별 지하주차장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층에 배치되며 지하층 주차장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동과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

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우수조 등(주거, 비주거 포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되고 일부 벽면 및 기둥에는 소화전 및 분전반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차량번호 인식등 자립형으로 설치되며 위치 등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다.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설치시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고 이는 입주자 부담임을 인지 바랍니다.
- 단지 내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해 지하수가 유입됨에 따라 이를 단지외로 배수하는 비용이 발생되고 이는 입주자 부담임을 인지 바랍니다.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주민공동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에는 한전 인입을 위한 전주 및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음. 또한 한전 인입 정책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각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타 공동주택 등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설비환기구, 근린생활시설, 재활용 창고,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은 정화조 배기덕트가 매립설치되며, 옥탑 일부구간 덕트 및 송풍기가 노출될 수 있고 소음 및 냄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급수,급탕,난방,오배수 등)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호별 계단 및 엘리베이터실의 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동별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한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 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등 고층아파트 특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함. 또한,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진입층 및 공개공지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인,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구간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 설치 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단독으로 설치됩니다.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차후 여하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민원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주차장, 기계/전기실, 저수조 등은 각 시설별(주거(아파트)/비주거(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전용면적비율대로 면적 분배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통합관리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 어 있지 아니함) 또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충별구성, 입점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동 최고 충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주택건설사업 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관련법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 등 외부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시설 종류는 어린이진 게스트하우스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카페라운지/키즈카페 주민회의실 등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 근린생활시설, 재활용 창고,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 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보관함 이용자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택배보관함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제연휀룸 등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부에 급배기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에 의한 사생활 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설계관련 동별 설계 및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유의사항 • 연돌현상 방지를 위해 주동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공간에 방풍구조를 위한 도어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과 비주거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에 계획되어 있고, 주차공간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분리되어 있어 비주거 입주자는 주거시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어이면 되친 조扎자이 나오에 대칭여 천재이 배치 미 이에 따른 나오사이 모제에 대체 초브칭 이지칭여 게야히 거으로 가즈치며 이에 이어른 제기한 스 어스니다.
• X	없으며, 지하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 등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썬큰,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1BL 0.10 1 10 1 10 1 10 1 10 1 10 1 10	전동 상부에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됩니다) [01동, 102동, 110동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동, 103동, 104동, 108동, 109동, 110동 인근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위치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하주차장에서 동출입 연결 안내 [1] 108~109동은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에서 동 출입 가능 [2] 101~107동, 110동은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에서 동 출입 가능 [109동, 110동 사이에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하거나 조명에 따른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107동, 107~108동, 109~110동 사이에 단지 내 출입구가 위치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106동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비주거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BL 0 2C 0 2	201동, 202동, 203동, 204동 옥상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위치 및 집광판의 규격/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동, 203동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동, 204동 인근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위치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동출입 연결 안내 ② 202~204동은 전층에서 동 출입 가능 ② 201, 205동은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에서 동 출입 가능 203동, 204동 사이에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하거나 조명에 따른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3~204동, 205동 사이에 단지 내 출입구가 위치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동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비주거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 본 • 본 • 단 • 아 • 주 • 주 • 입 • 각 도 • 일 • 혼 • 오 • 오 • 오 • 오 • 오 • 오 • 오 • 오 • 오 • 오	단위세대(목실 제고)의 천광고는 2,400mm이며, 마감 구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전기배선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시공됩니다. 보 아파트는 다양한 옵션으로 인해 세대별로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므로 옵션 내용을 상세히 확인 바랍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내에 다용도실(세탁실)은 견본주택 배치는 참고용이며 동의서 및 관련 POP가 우선이며 기 허가도서와 상이할 경우 동의서 및 관련 POP가 우선으로 할 수 있으며 상이시 설계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 상 향후 충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환기시스템은 기계환기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며, 콘센트, 스위치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됩니다. 역실주방 배기 시스템은 직배기 시스템으로 천장내 클린호스 설치 되고, 외벽에 CAP 마감이 됩니다. 리부난간 (콘크리트 난간 또는 난간대)의 디자인 및 높이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고, 충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수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관하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면구조 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건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고,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현관 디딤판의 가공석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지정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난방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옵션 평면 선택 등의 사유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추가 선택 품목으로 제공되며 미선택 시 전 타입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1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실외기 가동시 외부로 공기를 토출시키기 위한 그릴창, 고정식 모기장이 내부에 설치되며 본 공사시 설치 제품 및 형태(그릴의 손잡이, 그릴날 등)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며, 본공사시 장비배치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며, 디자인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화재시 하층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감지지 등의 설치로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발코니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여유공간을 필히 확인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발코니의 분합문 하부 마감을 고려하여 발코니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마루 자재 및 지정 가공석재는 자재의 특성 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 바닥 및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젠다이, 주방 상판(주방벽 : 확장 or 유상옵션) 등에 사용된 지정 가공석재 및 타일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재 특성 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품질 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비확장 시 확장 세대와 상이합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 (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커튼박스의 깊이는 배관 설치, 환기덕트 설치, 화장실 배기호스 등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충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크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 양변기, 세면기, 수전, 휴지걸이, 수건걸이, 슬라이드바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배관은 층상배관(당해층 배관)으로 설치되며,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일부 단위호실 화장실에는 급배수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바)창의 상부에 설비배관, 주름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팬트리,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가스배관이 가스레인지 좌,우측 벽에 설치되어 가스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환기팬의 위치 및 사양은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레인지후드 옆 가스장에는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이로인해 내부 가구의 공간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화장실 물내림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양변기 물탱크 주변에 자연현상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구간에는 우수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생소음은 하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세대 벽체(침실)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천정마감 없이 노춬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방발코니 상부로 환기 설비배관 등이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되지 않도록 천장을 시공할 경우층고가 현재보다 낮아질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정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옵션)은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대형타일 및 석재 등의 마감재는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힌지 및 레일 등)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중복선택으로 인한 자재증감 비용변동은 없습니다.
- 주방 벽, 욕실 벽 / 바닥 및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 현관 디딤판의 가공석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사양(색상, 사이즈), 제조사,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상판, 벽 타일 / 지정 가공석재(세라믹타일<유상옵션>), 주방벽엔지니어스톤 및 인테리어성 마감재(거실아트월, 가구판넬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외벽, 지방, 바닥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바닥난방에서 단열재 설치
(제7조제3항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기밀 및 결로 방지 조치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외기 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준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지역난방
(제7조제3항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 펌프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수변전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제7조제3항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조명설비 설치
(제/포제3왕제3오)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4-101-0008800 호	₩ 909,661,13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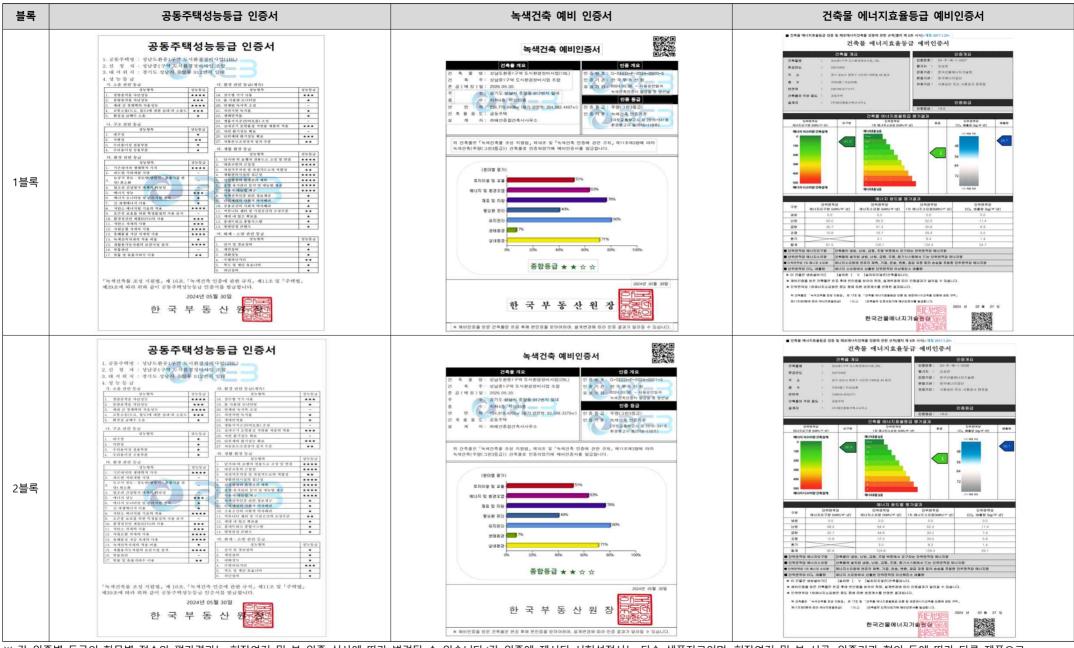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상호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유원이앤에프(주)
금액	6,259,990,000	1,147,351,000	2,09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8조,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분양사업자(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효성중공업(주)	진흥기업(주)	
법인등록번호	131171-0003584	110111-6770154	110111-0006349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8층(신흥동, 비와이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27층 外(회현동1가, AK타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송도동, 송도밀레니엄 807호)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www.해링턴스퀘어신흥역.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440번지) Ⅰ ☎1600-1211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며,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